



서민·취약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

중앙자활센터·서민금융진흥원·신용회복위원회(이하 '협약기관')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, 서민·취약계층의 자활·자립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서민·취약계층의 자활·자립지원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기본원칙) 협약기관은 지원·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약내용)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·협력하며,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1. 서민·취약계층의 자활·자립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및 채무 조정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2. 협약기관 이용자 중 他 협약기관의 종합·신용상담 및 자활 서비스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한 상호 정보 연계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
3. 협약기관 종사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

4. 지역자활센터를 포함한 협약기관의 지역 유관기관 서민금융 협의체 구성·운영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
5. 자활사업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공동 홍보
6. 기타 서민·취약계층 자활·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관련 실무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상호협약) 협약기관은 협력분야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며,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제6조(협약기간 및 효력)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협약서에 서명·날인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고, 협약기관이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의 내용은 협약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·의무는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.

제9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업무 협력 과정에서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.

제10조(기타)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,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4월 17일



중앙자활센터

원 장
이 병 학

이 병 학



서민금융진흥원

원 장
이 계 문

이 계 문



신용회복위원회

위 원 장
이 계 문

이 계 문